

화순군오수·분뇨·축산폐수처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7. 7. 2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98. 7. 16
- 다. 상 정 일 자 : 98. 7. 16(제64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요지

- 가. 제 안 자 : 환경보호과장 김 영 털
- 나. 개정사유
 - 행정절차법 (법률 제5241호)이 '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 제22조 (의견청취)에 의견청취 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개정 조례안 제20조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본조항을 삭제함.
- 다. 주요내용
 - 동 개정조례안 제20조 (의견진술 기회의 부여)를 삭제함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석호)

- 본 개정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등 의무부과 행정 행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'행정절차법'이 '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법에 처분 사전통지서, 청문통지서, 의견제출서등 모든 행정 절차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화순군 오수·분뇨·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0조 (의견진술 기회의 부여)와 행정절차법 제 22조의 (의견청취)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코자 하는 조항으로서, 화순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,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가결”

첨 부 : 화순군오수·분뇨·축산폐수처리및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
조례안

화순군오수·분뇨·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오수·분뇨·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재20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0조 (의견진술 기회의 부여)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	<p>(삭 제)</p>